

정 관
(장학재단)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수학생 및 저소득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이하 "법인"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488번지 5층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단정한 고등학생·대학생 *정학생*
- ② 저소득층(하위 20%) 이하의 초·중·고·대학생 *정학생*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수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5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방법)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칭)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사업계획의 승인
- 7. 기타 법인운영의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3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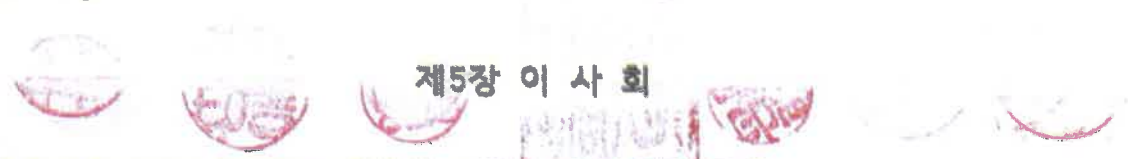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이사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 의결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 ① 제27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의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의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지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회계원칙)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이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차급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간내에 해산통기 하고 동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타 목적사업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또는 2022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창립총회시 전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이사장	이길행	61916) 광주시 서구 화운로 278. 102동 901호(광천e편한세상)	2년
이사	이항수	61064) 광주 북구 서하로 120, 5동, 1503호(용봉동, 삼성아파트)	2년
이사	김우중	61244) 광주시 북구 서림로 141-13	1년
이사	배영모	62382) 광주 광산구 어룡대로563번길 33-1 (운수동)	1년
이사	정일영	62049) 광주시 서구 풍금로38번길 27, '등대바다' (풍암동)	1년
감사	전광조	61182) 광주시 북구 용주로30번길 60, 104동 1404호(용봉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2년
감사	여학영	61149) 광주시 북구 월동로 88, 101동1104호(각화동, 글로벌아파트)	1년



【 별지목록 2 】

현재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22년 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해	당	없	음

※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분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할 것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재 산 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평 가 액	비고
해	당	없	음			



임원취임승인서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이 사 장 이 길 행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설립 당초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2021. 12. 30.

광주광역시교육감



○ 임원 취임자 명단

연번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기
1	이사장	이길행	600613-1657617	광주 서구 화운로278,102-901	2년
2	이사	이항수	71050-1640215	광주 북구 서하로 120,5동1503	2년
3	이사	김우중	631008-1559923	광주 북구 서림로 141-13	1년
4	이사	배영모	540314-1627910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563번길 33-1(운수동)	1년
5	이사	정일영	580620-1551113	광주 서구 풍금로38번길 27, '등대바다'(풍암동)	1년
6	감사	전광조	580323-1522612	광주 북구 용주로30번길 60, 104-1404(용봉동,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2년
7	감사	여학영	590310-1634811	광주 북구 월동로 88,101-1104, (각화동,글로벌아파트)	1년

사업계획서 (2022년)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I. 사업목적

-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수학생 및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주요사업 목표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品行 단정한 고등학교·대학생
2. 저소득층(하위 20%) 이하의 초·중·고·대학생

III. 세부사업 내용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品行이 단정한 고등학생, 대학생

가.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현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연락망 구축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2년 상반기 실시
- 장 소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본 법인의 사무소
- 사업내용 : -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品行이 단정한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다. 시행방법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광주 시내 고등학생, 대학생 중 추천하여 선정
- 선정된 대상자를 상대로 필요한 장학금 지원

라. 소요예산 : 금 22,000천원

- 인건비 : 없음
- 운영비 : 22,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일반운영비	고등학생, 대학생 6명x2,000천원	12,000천원
	고등학생, 대학생 10명x1,000천원	10,000천원
	총 계	22,000천원

마. 기타사항

- 설문 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보완
- 온라인(홈페이지)을 이용하여 사후관리를 통한 유기적 연락체계 구축

바. 향후계획

- 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부금 장려 및 홍보 활성화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학관련 단체들과 연계하여 MOU체결 및 조사사업 실시

2. 저소득층(하위 20%) 이하의 초·중·고·대학생

가. 사업목적

- 저소득층 학생으로 국가 및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사업내용

- 개최시기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 장 소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법인 사무실
- 사업내용 : 저소득층 가족을 둔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

다. 시행방법

-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 중 추천을 받아 선정
- 선정된 대상자를 상대로 필요한 장학금 지원

라. 소요예산 : 금 14,000천원

- 인건비 : 없음
- 운영비 : 장학금

구분	산출내역	금액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학생 7명x1,000천원	7,000천원
	저소득층 학생 14명x500천원	7,000천원
	총 계	14,000천원

마. 기타사항

- 저소득 부모를 둔 학생이 경제적 문제로 친구들과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애로사항 파악
-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심리상담 진행

바. 향후계획

-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부금 및 지원금을 모집하여 추후 사업을 확장할 예정

2022년도 사업계획서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시행기간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목적 사업	1. 법인설립 등기 등 ○ 법인등기 및 보고 ○ 기본재산 인수 및 소유권이전 ○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법인신고 2. 목적사업 ○ 수혜대상자 선정 ○ 장학금 지급 3. 기금 조성 ○ 기본재산 확충 ○ 목적사업 기금 조성 4. 사업개시일 2022. 1. ~	○ ○ ○ ○ ○	○ ○ ○	○ ○ ○	○ ○ ○	2. 목적사업 장학금 지급 1 사업.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品行 단정한 고등학생·대학생 ① 200만원×6명=1,200만원 ② 100만원×10명=1,000만원 2 사업. 저소득층(하위20%)이하의 초·중·고·대학생 자녀 ① 100만원×7명=700만원 ② 50만원×14명=700만원 ○ 기부금 30,000천원

1차년도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22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 비	회비	10,000	① 경상비	인건비 (세부내역필요)	
	임원특별회비			운영비 (세부내역필요)	500
	소 계	10,000		재단설립 비용등	3,000
		소 계		3,500	
② 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30,000	③법인세		300
	소 계	30,000	④목적 사업비	1. 장학금 지원 ① 고등, 대학생 장학금	22,000
③ 과실소득		② 저소득층 초, 중, 고, 대학생		14,000	
④ 수 익 사 업	부동산 임대수입			2. 학술연구지원	
				소 계	36,000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⑤ 천 기 이월액	이월금		⑥차기 이월액	목적사업 준비금	천 기
					당 기
	소 계			이월잉여금	200
⑥법인세 환급액			소 계		
합 계		40,000	합 계		40,000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발기인 대표

이길행 (서명)



경상비 명세서 (2022년)

(단위 : 원)

과목	금 액	산출내역	비고
재단설립 비용등	3,000	사단법인 설립에 따른 행정사 비용 등	
운영비	500	회의비, 전기요금, 사무용품비	
계	3,500		

사업계획서 (2023년)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I. 사업목적

-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수학생 및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주요사업 목표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品行 단정한 고등학교·대학생
2. 저소득층(하위 20%) 이하의 초·중·고·대학생

III. 세부사업 내용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品行이 단정한 고등학생, 대학생

가.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현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연락망 구축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3년 상반기 실시
- 장 소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본 법인의 사무소
- 사업내용 :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品行이 단정한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다. 시행방법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광주시내 고등학생, 대학생 중 추천을 받아 선정
- 선정된 대상자를 상대로 필요한 장학금 지원

라. 소요예산 : 금 10,000천원

- 인건비 : 없음
- 운영비 : 10,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일반운영비	고등학생, 대학생 10명x1,000천원	10,000천원
	총 계	10,000천원

마. 기타사항

- 설문 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보완
- 온라인(홈페이지)을 이용하여 사후관리를 통한 유기적 연락체계 구축

바. 향후계획

- 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부금 장려 및 홍보 활성화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학관련 단체들과 연계하여 MOU체결 및 조사사업 실시

2. 저소득층(하위 20%) 이하의 초·중·고·대학생

가. 사업목적

- 저소득층 학생으로 국가 및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사업내용

- 개최시기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 장 소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법인 사무실
- 사업내용 -저소득층가족을 둔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

다. 시행방법

-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 중 추천을 받아 선정
- 선정된 대상자를 상대로 필요한 장학금 지원

라. 소요예산 : 금 10,000천원

- 인건비 : 없음
- 운영비 : 장학금

구분	산출내역	금액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학생 6명x1,000천원	6,000천원
	저소득층 학생 8명x500천원	4,000천원
	총 계	10,000천원

마. 기타사항

- 저소득 부모를 둔 학생이 경제적 문제로 친구들과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애로사항 파악
-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심리상담 진행

바. 향후계획

-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부금 및 지원금을 모집하여 추후 사업을 확장할 예정

2023년도 사업계획서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시행기간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목적 사업	1. 법인설립 등기 등 ○ 법인등기 및 보고 ○ 기본재산 인수 및 소유권이전 ○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법인신고 2. 목적사업 ○ 수혜대상자 선정 ○ 장학금 지급 3. 기금 조성 ○ 기본재산 확충 ○ 목적사업 기금 조성			○	○	○ 장학금 지급 1 사업. 학업 성적이 우수 하고品行 단정한 중·고등·대학생 ①100만원×10명 =1,000만원 2 사업. 저소득층(하위 20%) 이하의 초·중·고·대학생 자녀 ①100만원×6명=600 만원 ②50만원×8명=400 만원

2차년도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23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 비	회비	10,000	①경상비	인 건 비 (세부내역필요)	
	임원특별회비	10,000		운 영 비 (세부내역필요)	
	소 계	20,000		소 계	
② 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200
③ 과실 소득			④목적 사업비	1. 고등,대학생 장학금	10,000
				2. 저소득층 초,중,고, 대학생	10,000
				소 계	20,000
④ 수 익 사 업	제1사업		⑤기본재산 편입액		
	제2사업		⑥차기 이월액	목적 사업 준비금	전 기
	제3사업			이월잉여금	당 기
	소 계			소 계	
⑤ 전 기 이월액	이월금	200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합 계		20,200	합 계		20,200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발기인 대표

이길행 (서명)



사업계획서 (2024년)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I. 사업목적

- 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수학생 및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주요사업 목표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교, 대학생
2. 저소득층(하위 20%) 이하의 초·중·고·대학생

III. 세부사업 내용

1.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대학생

가.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는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현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연락망 구축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24년 상반기 실시
- 장 소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본 법인의 사무소
- 사업내용 :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다. 시행방법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광주시내 고등학생, 대학생 중 추천을 받아 선정
- 선정된 대상자를 상대로 필요한 장학금 지원

라. 소요예산 : 금 10,000천원

- 인건비 : 없음
- 운영비 : 10,000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일반운영비	고등학생, 대학생 10명x1,000천원	10,000천원
	총 계	10,000천원

마. 기타사항

- 설문 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보완
- 온라인(홈페이지)을 이용하여 사후관리를 통한 유기적 연락체계 구축

바. 향후계획

- 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부금 장려 및 홍보 활성화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학관련 단체들과 연계하여 MOU체결 및 조사사업 실시

2. 저소득층(하위 20%) 이하의 초·중·고·대학생

가. 사업목적

- 저소득층 학생으로 국가 및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나. 사업내용

- 개최시기 :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 장 소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법인 사무실
- 사업내용 -저소득층가족을 둔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

다. 시행방법

-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 중 추천을 받아 선정
- 선정된 대상자를 상대로 필요한 장학금 지원

라. 소요예산 : 금 10,000천원

- 인건비 : 없음
- 운영비 : 장학금

구분	산출내역	금액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학생 6명x1,000천원	6,000천원
	저소득층 학생 8명x500천원	4,000천원
	총 계	10,000천원

마. 기타사항

- 저소득 부모를 둔 학생이 경제적 문제로 친구들과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애로사항 파악
-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심리상담 진행

바. 향후계획

- 보다 많은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부금 및 지원금을 모집하여 추후 사업을 확장할 예정

2024년도 사업계획서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시행기간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목적 사업	1. 법인설립 등기 등 ○ 법인등기 및 보고 ○ 기본재산 인수 및 소유권이전 ○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법인신고 2. 목적사업 ○ 수혜대상자 선정 ○ 장학금 지급 3. 기금 조성 ○ 기본재산 확충 ○ 목적사업 기금 조성			○	○	○ 장학금 지급 1 사업. 학업 성적이 우수 하고品行 단정한 중·고등·대학생 ①100만원×10명 =1,000만원 2 사업. 저소득층(하위 20%) 이하의 초·중·고·대학생 자녀 ①100만원×6명=600 만원 ①50만원×8명=400 만원

3차년도 사업수지예산서

회계연도 : 2024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회 비	회비	10,000	①경상비	인 건 비 (세부내역필요)	
	입원특별회비	10,000		운 영 비 (세부내역필요)	
	소 계	20,000		소 계	
② 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재산		③법인세		
	소 계		④목적 사업비	1. 고등,대학생 장학금	10,000
③ 과실 소득				2. 저소득층 초,중,고, 대학생	10,000
				소 계	20,000
	제1사업		⑤기본재산 편입액		
④ 수 익 사 업	제2사업		⑥차기 이월액	목적 사업 준비금	전 기
	제3사업				당 기
	소 계			이월잉여금	
⑤ 전 기 이월액	이월금			소 계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합 계		20,000	합 계		20,000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발기인 대표

이길행



상근직원정수승인서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이사장 이길행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장학재단 설립 당초 상근직원 정수 승인 신청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2021. 12. 30.

광주광역시교육감



▣ 상근직원 정수 승인 사항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무급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의결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